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음성입니다 】



음성군 수도사업소



수신 음성군수(허가과장)

(경유)

제목 대소 프리즘환타 공동주택관련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등 협의 요청

1.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12.)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주민들의 정화조 설치·유지관리비용 절감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한 하천오염방지 및 주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소면과 삼성면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중이며 향후 하수도설치(변경)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하여 2018년 12월 시설공사 준공예정입니다.

2. 대소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회 사업부지와 인접된 대소면 소석리 일원 프리즘환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여부

1) 프리즘환타에서 발생한 생활하수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희망 여부 회신

※ 프리즘환타 개발계획 부지는 2009년 12월 승인된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상에 하수처리구역에 미포함 되었으나, 금왕 및 대소지역 처리구역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변경 검토 등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용역 상에 계획부지 일부(1단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으로, 연계처리 여부는 전체 계획부지(1,2,3단지)에 대하여 검토 회신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시 원인자부담금 등 납부대상으로 납부의사 회신

1)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1,313,940원/㎡) 납부대상이며 준공전 납부하여야 함.

2) 또한, 개발계획부지에서 공공하수관로까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함.

3. 다만, 대소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협의 과정에서 본 협의과 다르게 사업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수 도 사 업 소 장



주무관 유승담 하수도팀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전결 2016. 7. 26.
남풍우

협조자 주무관 김동현 주무관 이성호 주무관 윤장섭

시행 수도사업소-23559 (2016. 7. 26.) 접수

우 2770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수도사업소) / <http://www.eumseong.go.kr>

전화번호 043-871-2432 팩스번호 043-871-1953 / llrsdl@korea.kr / 비공개(5)

【 대한민국이 당신의 사업에 힘이 되도록 ! 2016 경제총조사 ! (2016. 6. 7. - 7. 22.) 】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고향 음성입니다 】



음 성 군



수신 수도사업소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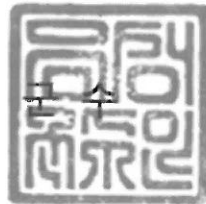
제목 대소 프리즘환타 공동주택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관련 회신

1. 수도사업소-23559(2016.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음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소면과 삼성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하여 프리즘환타(주)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연계처리 희망여부를 붙임의 서류로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프리즘환타 관련 서류 1부. 끝.

음 성 군 수



주무관	최송이	주택팀장	병가	허가과장	전결 2016. 8. 2. 박순창	
협조자	주무관	한정숙	주무관	박종인	주무관	김지원
시행	허가과-46345	(2016. 8. 2.)	접수	수도사업소-24500	(2016. 8. 2.)	
우	276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 http://www.eumseong.go.kr	
전화번호	043-871-5842	팩스번호	043-871-1923	/ ssonge@korea.kr	/ 비공개(5)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프리즘 환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35 프리즘빌딩 7층 TEL 02)556-5975 FAX 02)564-3150

문서번호	프리즘 201608-01
시행일자	2016. 08. 01
수신	음성군수
참조	여가과 관련 담당자
제목	공공하수시설 연계처리 요청의 권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오염방지 주민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에 따른 대소면과 삼성면 일원으로 하수처리구역확대 계획에 대하여 귀청의 추진 사업에 감사드립니다.
3. 당사는 산34-9번지 일원에 약 4만평의 토지를 소유하여 블록(BL)별 단계 별 공동주택(아파트)건립사업을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을 제안하여 군관리계획결정 및 3개 블록(BL) 중 2개 블록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현 사업추진 중(▷1BL : 착공 (2018년 8월 준공예정) / ▷2BL, 3BL : 시공사_사업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4. 금번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에 따른 대소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사의 지구단위구역 내 전체 사업계획부지(1,2,3블록)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여 공공하수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오니 고부적인 회신을 희망합니다. 끝

프리즘 환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만



【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



음 성 군



수신 (주)무궁화신탁 귀하 (우0618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빌
딩 19층 (대치동))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태경에코그린아파트]

1.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고, 납부 후 영수증을 팩스(043-871-1953) 또는 인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추후, 건축물 설계변경 및 표시변경 등 건축물 인허가 일괄처리대상일 경우 일괄 처리 전 **재협의** 하여야 하며, 오수량 변경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위치 :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65-5,8번지

나) 부 과 면 적 : 12,405.2354㎡

다) 건축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라) 부 과 오 수 량 : 72.893.㎡/일

마) 납 부 금 액 : 금95,777,020원(금구천오백칠십칠만칠천이십원)

바) 산 출 근 거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 연 락 처 :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871-2433)

- 붙임 1.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2. 납부통지서 1부. 끝.

음 성 군 수



주무관 이성호 하수도팀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전결 2018. 7. 23.
남풍우

협조자 주무관 윤장섭 주무관 경민희

시행 수도사업소-20844 (2018. 7. 23.) 접수

우 276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 수도사업소 / <http://www.eumseong.go.kr>

전화번호 043-871-2433 팩스번호 043-871-1953 / lisungho@korea.kr / 비공개(6)

【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신축)

■ 건축위치 : 음성군 생곡면 신양리 465-5번지 외1필지[태경에코그린아파트]

■ 건축면적 : 839.9963㎡ ■ 건축연면적 : 12405.2354㎡

■ 오수량 산출내역

구분	층	건축물용도	산출내역				오수량 (㎡/일)	비고
			면적(㎡)	인원	리터(ℓ)	백분율		
신축내역	지하1층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주차장	2,595.00	0.00	0	0.001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489.38	0.00	15	0.001	7.340	
	지하1층	화장실	17.16	0.00	15	0.001	0.257	
	1층	관리실,경비실, 통신실	65.69	0.00	15	0.001	0.985	
	1층	계단실	126.26	0.00	0	0.001		
	2~14층	아파트(13세대)	9,111.75	41.60	170	0.001	7.072	
	2~14층	아파트(91세대)		336.70	170	0.001	57.239	
부과오수량 합계			12,405.24				72.893	
「 하수도법 」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 」 제20조 규정에 의거 발생오수량이 10톤 이상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임.								
▣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R=4개수, 세대인원수N(인)=2.7+(R-2)*0.5=3.7인] [R=3개수, 세대인원수N(인)=2.7+(R-2)*0.5=3.2인]								
오수발생량(㎡/일)			72.893		단가(원/㎡)		1,313,940	
▣ 납부 할 원인자부담금액			금95,777,020원 (금구천오백칠십칠만칠천이십원)					

【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



음 성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법 협의[대소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산19-25번지 외 6필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동주택(아파트)]
신청이 있어 불임과 같이 관련법 협의 의뢰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검토 결과를
2018. 8. 10.까지 회신(공문회신 또는 세움터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 원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2. 건축위치 :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산19-25번지 외 6필지
3. 신청내용

사업주체	상 호	대소지역주택조합 삼성홈이엔씨(주)					
	대 표 자	김희홍 김학수					
	영업소재지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137번길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630호(서초동)					
사 업 계 획 개 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주 택 건 설 규 모					비 고
대소면 오류리 산19-25번지 외 6필지	8,375㎡	구 분	세 대 당 규 모			세대수	
			전용면적	공유면적	계	154	
		59	59.9790	23.7744	83.7534	89	
		65	65.7507	24.8969	90.6476	36	
		84A	84.9848	31.6051	116.5899	20	
		84B	84.9878	35.8008	120.7886	6	
		84C	84.9836	32.8949	117.8785	3	

- 불임 1. 관련법 협의내역 1부.
2. 협의서류(사이버 협의) 1부. 끝.

음 성 군 수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홍보과장, 민원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산업개발과장, 수도권사업소장

주무관 최송이 공동주택팀장 전결 2018. 7. 12.
선상균

협조자 주무관 한정숙 주무관 김지원

시행 건축허가과-42437 (2018. 7. 12.) 접수 수도권사업소-19895 (2018. 7. 12.)

우 2769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 <http://www.eumseong.go.kr>

전화번호 043-871-5842 팩스번호 043-871-1923 / ssonge@korea.kr / 비공개(3)

【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서
[대소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협의사항	협의의견	검토자	비고
하수도법			
	특별 청	이성호	
수도법	• 50m 이내에 평역상수도 관로가 있음 • 수도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급수가능여부, 사용량,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음성군 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수도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 절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 수도법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은 「수도법」,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박정우	
지하수법	0.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일양수능력이 100톤 초과시 허가, 그 이하시 신고하여야 함. 0. 농업용, 가정용을 제외한 지하수시설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임.	박정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협의서
(대소지역주택조합아파트)

협의사항	협의의견	검토자	비고
하수도법	○ 본 개발계획 부지는 2016년에 수립된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상 하수처리구역이 편입되어 있으나, 본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량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임. ○ 현재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으로 본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량이 반영되어 증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 유입시기, 연계처리 등은 추진일정 및 행정절차(재원협의) 진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또한,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으로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차)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납부금액이 산정(확정)되며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함. ○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개발계획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가 가능한지 용량검토(오수 수리계산) 자료를 제시해야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수리계산서 별도 첨부하여 협의할 것) ○ 개발사업 부지내 우수처리를 위하여 연결하는 기존 우수관의 관경이 부족할 경우 인근지역의 우수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수리계산서 별도 첨부하여 협의할 것) ○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27조 및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 및 13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이성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의거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임	이성호	